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2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“77만원”을 “81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5만원”을 “58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직지원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4(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) ① 법 제18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0조의4(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장기복무 제대군인: 월 <u>77만</u> 원	1. ----- <u>81만</u> 원
2. 중기복무 제대군인: 월 <u>55만</u> 원	2. ----- <u>58만</u> 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731